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한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-104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

발 의 자 : 한선미, 강동오, 고병준,
권영숙, 권인순, 김승수,
남해석, 이상원, 차해영,
채우진

1. 제안이유

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지도원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조항의 정비(안 제6조)
- 나.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의2)

3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

4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22. 9. 15. ~ 9. 19.(의견없음)

나. 개정조례안 : 붙임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금연지도원 운영) ① 구청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·폐기하여야 한다.

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각 호에 따른다.

1.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다.

2. 위촉 및 활동 수당을 받는 금연지도원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.

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

다. 다만, 보건복지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
2.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
3.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
4.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금연지도원 위촉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<u>유아교육법</u>」 및 「<u>영유아보육법</u>」에 따른 유치원, 어린이집 시설의 <u>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1조의2(금연지도원 운영) ①</u> <u>구청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·폐기하여야 한다</u></p> <p>③ <u>금연지도원의 임기는 각 호에 따른다</u></p> <p>1.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</p>

우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다

2. 위촉 및 활동 수당을 받는 금연지도원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

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

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

2.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

3.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

4.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

한다

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

⑦ 그 밖에 금연지도원 위촉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[관 계 법 령]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9조의5(금연지도원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마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이혜경
연 락 처	00-3153-9053